

2021 「새로운 경기 창업공모」 참가자 모집 공고

우리 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「2021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」을 개최하고자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(예비)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1년 2월 22일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1. 사업 개요

□ 추진 목적

-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에 대한 창업역량 강화
- 우수 아이템 포상을 통한 창업분위기 확산

□ 행사 개요

- 행사명 : 2021 「새로운 경기 창업공모」
- 개최기간 : 2021. 2월 ~ 10월
- 참가대상 : 기술 및 지식산업형 사업화 아이템 (아이디어·기술·제품)
- 운영방식 : (예선·본선) 리그별 개최 → (결선) 통합 개최

구분	1차 예선	2차 예선	본선	결선**
예비창업리그	참가자 전원	25+ α 팀*	15팀	10팀
창업리그	참가자 전원	25+ α 팀*	15팀	

* ' α ' : 경기도내 시군 창업공모전(경진대회) 입상자(1차 예선 면제)

** 리그별 결선진출자 배정 수. 참가자 비율, 본선대회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

○ 참가자격 : 지역제한 없음

- (예비창업리그) 개인 또는 3명 이하로 구성된 단체(팀)

- (창업리그)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'18. 2. 23. 이후 사업을 개시한 자 */**

* 기준일 :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(개인)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연월일(법인)

** 다수의 사업자등록의 경우,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기준일 적용

- 입상규모 : 총 10개팀 및 115백만원 시상금 지급
- 주최·주관 : 경기도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□ 참가 제한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
 - ※단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·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는 제외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 - ※단, 접수마감일 이전 세금완납 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분납확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
- 경기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
- 창업 후 3년이 경과된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
-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 10억원을 초과한 자
-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

-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
-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
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-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-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·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- 보조금 횡령·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

-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타 공모전(창업경진대회)을 통해 누적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동일 또는 유사 아이템
-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행성 및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템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
-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('별첨.1' 참조)
- 게임 업종 (게임오디션 별도 개최)

2. 추진방법 및 절차

참가자 모집공고 (온라인)	2~3월	· 이지비즈 시스템(www.egbiz.or.kr), 경기스타트업플랫폼(www.gsp.or.kr) · 접수 : 이지비즈 시스템(www.egbiz.or.kr) · 접수기간 : '21.3.15.(월),09:00 ~ 3.31.(수), 18:00
↓		
리그별 1차예선 (서류/서면심사)	4월	2차예선 진출자 50팀+α 선정 (예비창업리그 25팀, 창업리그 25팀) ※ 'α': '20. 1. 1. 이후 경기도내 시군 창업공모전 입상자(1차예선 면제)
↓		
리그별 2차예선 (대면심사)	5월	본선진출자 30팀 선정 (예비창업리그 15팀, 창업리그 15팀)
↓		
워크숍	5~6월	행사개요 및 진행방법 안내, 초청특강 등
↓		
엑셀러레이팅	5~8월	멘토링, 데모데이 등
↓		
리그별 본선 (발표심사)	9월	결선진출자 10팀 선정
↓		
통합 결선 (발표심사)	10월	입상자 순위 결정 ※리그별 구분 없음

* 접수현황에 따라 상기 일정을 비롯하여 절차 등이 변경·취소 가능.

** 1차 예선 결과는 이지비즈 시스템(www.egbiz.or.kr)를 통해 고지되며, 2차 예선 · 본선은 개별 통지, 결선대회 최종 결과는 현장 발표임.

3. 시상 및 인센티브

□ 시상 및 포상 내역

구 분	합 계	대상	최우수상	우수상	장려상
입상자수	10	1	2	2	5
시 상 금	115백만원	30백만원	20백만원/社	10백만원/社	5백만원/社
포상훈격	-	경기도지사	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		

※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의 입상자가 없을 수 있음.

□ 가산점

- 적용 시기·한도 : 1차 예선 평가시 최대 3점 이내 부여
- 대상 및 인정 점수
 - 여성기업(1점), 장애인 고용(1점), 사회적기업(1점), 재창업자(1점)
 - * 증빙서류 : 여성기업 확인서,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, 사회적기업 인증서, 대표자 폐업사실증명원(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체) 등
 - 창업교육과정 이수경력(2점)

※ 정부·지자체 창업지원기관(창업진흥원, 중소기업진흥공단, 창조경제혁신센터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) 주관 창업교육으로 20시간 이상 수료교육만 인정하며, 각각의 수료시간 합산 가능

□ 입상(결선진출)자 혜택

- 경기도 창업지원 사업 및 시설 신청시 가산점 부여
- 도민기자단·SNS 등을 활용한 홍보기회 제공

4. 참가 신청

□ 제출서류

가. 공통

- [지정양식] 참가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, 참가서약서 각 1부.
- [해당 시] 가산점, 1차예선 면제, 참가제한 예외 등의 증빙자료 각 1부.

나. 예비창업 리그 ※ 단체 참가시 참가자 전원에 해당

- 신분증 사본 및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 내역) 각 1부.

다. 창업 리그

- 사업자등록증(개인·법인)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각 1부.
- 대표자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 내역)
-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.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(추후 제출, 2차예선 진출자 해당) 각 1부.

□ 신청방법

- 이지비즈 시스템(www.egbiz.or.kr)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공지사항 '2021 「새로운 경기 창업공모」 참가자 모집' 선택 → (연결페이지) → 공고문 하단 '지원사업 신청하기' 선택 → 기본사항 입력 및 파일(제출서류) 업로드

□ 유의 사항

- 참가신청 이후 공개된 아이템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사전에 지식재산권의 획득 등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.
- 타인의 아이템을 모방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과 모집공고문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.
- 모든 참가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수상에 적합한 수준의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규모를 축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.
-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, 참가신청서를 비롯한 제출서류 일체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상금 환수는 물론 모든 혜택이 취소되고, 향후 5년간 동 공모전 및 우리 원의 지원사업에 참여가 불가함.

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원 [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] 제12조,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- 경기도 및 도내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□ 접수 및 문의

- 접수기간 : 2021. 3. 15.(월), 09:00 ~ 3. 31.(수), 18:00
- 접 수 처 : 이지비즈 시스템(www.egbiz.or.kr) - 온라인 신청/접수
- 문 의 처 : 벤처기반팀 Tel. 031-259-6094, E-mail. danahub@gbsa.or.kr
 - ☞ 시스템문의(회원가입, 자료 업로드 등) : Tel. 031-259-6296
 - ☞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(이의동) 본관동 9층

끝.

【 별첨 1 】

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업종 분류	품목코드	융자 제외 업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건설업	41~42	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3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4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은 지원가능 업종)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담배 중개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722中	주류, 담배 소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금융 및 보험업	64~66	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
	7151	회사본부
수의업	731	수의업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교육서비스업	851~854	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	855~856中	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
보건업	86	보건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24	갬블링 및 베팅업
협회및단체	94	협회 및 단체
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	97~98	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

- * 정책자금 융자대상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융자 제외대상. 단,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제조업 영위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사회적 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
- *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(55101) 중 관광숙박업,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(55109),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(85614), 자동차 임대업(76110),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(91210), 기타 오락장 운영업(91229), 수상오락 서비스업(9123), 산업용 세탁업(96911), 세탁물 공급업(96913)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- * 산업단체(94110), '나들가게'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·식료품 및 담배중개업(46102)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- * 재창업자금의 경우, 건설업(41~42)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며, 도매업(45, 46)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- * 사회적경제기업(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)의 경우, 보건업(86) 영위기업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창업 기준

주 체	사업장소	사 례		창업여부
A개인	갑 장소에서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	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조직변경
			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	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형태변경
			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A법인	갑 장소에서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	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위장창업
			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	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형태변경
			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A개인	을 장소에서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	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법인전환
			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	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		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A법인	을 장소에서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	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사업승계
			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	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		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A개인	을 장소에서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	다시 A명으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사업이전
			다시 A명으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	다시 A명으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사업확장
			다시 A명으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업종추가
<p>1.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(4자리)를 기준으로 함(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“동종업종”에 해당)</p> <p>2. “갑”장소는 기존사업장, “을” 장소는 신규사업장(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(담, 출입문, 도로 등)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)</p> <p>3. “A명의”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같은 경우를 말함</p>				